우리 나라 선거제도의 우월성과 생활력

김 히 성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 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사회에서 매개 근로자들이 정 치적권리를 행사하지만 전체 인민의 자주적 권리는 인민들의 의사에 따라 선거되는 인 민정권에 의하여 대표됩니다.》

(《김정일선집》 증보판 제16권 473폐지)

위대한 대원수님들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세워지고 발 전완성된 우리 나라 선거제도는 우리 공 화국의 강화발전과 더불어 자기의 우월성 과 생활력을 남김없이 발휘하고있다.

우리 나라에서 진행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의 전과정은 우리의 선거제도가 명실공히 수령, 당, 대중의 일심단결을 더욱 공고히 하고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우리의 인민정권을 더욱 공고히 하는데 이바지하는 선거제도라는것을 뚜렷이 확증하고있다.

우리 나라 선거제도의 우월성과 생활력은 무엇보다먼저 모든 선거구들에서 절세의 위인들을 대를 이어 높이 우려려 모실수 있도록 법화함으로써 혁명대오의 일 심단결을 더욱 공고히 하고있는데서 표현 된다.

그것은 우선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 일이 공포되면 제일먼저 위대한 대원수님들 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자기 선거구의 최고인민회의 대의원후보자로 높이 추대 하고있는데서 찾아볼수 있다.

공화국선거법에서는 여러 선거구들에서 같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후보자를 추천 할수 있으며 이 경우 그는 어느 한 선거 구에만 등록할것을 발표할데 대하여 규제 하고있다. 이것은 우리의 선거제도가 위대한 수령, 위대한 령도자를 자기 선거구의 대 의원후보자로 높이 모시고싶어하는 온 나 라 인민들의 절절한 념원을 실현할수 있 게 하는 선거제도라는것을 보여준다.

지난 제12기까지의 최고인민회의 대의 원선거들에서 우리 인민들은 대의원선거 와 관련한 결정이 발표되면 전국의 모든 선 거구들에서 선참으로 위대한 대원수님들 을 자기 선거구의 대의원후보자로 높이 추 대하였다.

최고인민회의 제13기대의원선거를 위한 모든 선거구들의 후보자추천회의들에서 전 체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사 상과 위업을 받드시여 선군조선의 존엄과 위용을 만방에 높이 떨치시는 우리 인민 의 운명과 미래의 전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자기 선거구의 대의원후보 자로 높이 추대하였다.

위대한 대원수님들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자기 선거구의 최고인민회의 대의원후보자로 높이 추대하는것은 공화국공민이라면 누구나 바라는 간절한 소망이며 가장 큰 영광이다. 그렇기때문에 우리 나라에서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가 진행될 때 전국의 모든 선거구들에서위대한 대원수님들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자기 선거구의 대의원후보자로 추대하였다.

이것은 우리 인민이 자기 수령, 자기 령도자를 얼마나 진심으로 믿고 따르고있 으며 수령과 인민의 일심단결이 얼마나 공 고한가 하는것을 보여주는 동시에 령도자 와 뜻도 하나, 마음도 하나, 운명도 하나 가 되려는 우리 인민의 영원불멸할 신념 과 의지의 발현으로 된다.

그것은 또한 위대한 수령, 위대한 령도자를 국가의 최고수위에 변함없이 높이 추대하고있는데서 찾아볼수 있다.

령도의 중심, 단결의 중심으로서의 수령의 절대적인 권위는 수령을 국가의 최고수위에 모실 때 더욱 공고한것으로 된다. 그

것은 수령을 국가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셔야 모든 국가활동이 수령의 유일적령도 밑에 수령의 구상과 의도대로 진행되게 되며 그 과정에 수령에 대한 인민대중의 지지와 신뢰가 공고화되기때문이다.

우리 나라에서 선거는 단순히 공민들이 자기의 정치적권리를 행사하는 계기만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 인민이 자기 수령, 자기 령도자를 국가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시는 정치행사이며 자기 운명을 자기 수령, 자기 정권과 결부시키는 기본공정이다. 그렇기때문에 우리 나라에서 모든 선거자들은 자기 수령, 자기 령도자에 대한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심을 가지고 선거에 한결같이 참가하고있으며 찬성의 한표를 바치고있다.

최고인민회의 제1차회의와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1차회의, 수령의 혁명위업, 선 군혁명위업계승의 력사적시기에 진행된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5차회의와 제12기 제5차회의를 비롯한 최고인민회의들에서는 전체 장병들과 인민들의 한결같은 의사에따라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우리 국가의 최고수위에 높이 추대한였음을 온 세상에 선포하였다. 위대한 수령, 위대한 령도자를 우리 국가의 최고수위에 높이 추대한것은 우리 국가의 최고수위에 높이 추대한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만이 지니는 최대의 영광이고 크나큰 자랑이다.

주체101(2012)년 4월 13일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5차회의에서 수정보충된 사회주의헌법은 우리 나라 선거제도가 위대한대원수님들을 국가의 최고수위에 영원히 높이 모심으로써 우리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을 더욱 공고히 하는 선거제도로 되게 하는데서 특별한 의의를 가진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지도밑에 진행된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5차회의에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는 우리 공화국의 영원한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시라는것

을 법화한 사회주의헌법이 제정공포되 였다.

위대한 수령님은 우리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이시고 위대한 장군님은 공화국의 영 원한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시라는것을 선 포한 김일성-김정일헌법이 제정됨으로 하 여 우리의 선거제도는 명실공히 이 세상 그 어느 나라에도 없는 수령영생위업실현을 확 고히 담보하는 가장 혁명적인 선거제도로 자기의 참모습을 더욱 뚜렷이 과시하게 되 였다.

우리 나라 선거제도의 우월성과 생활력은 다음으로 우리의 인민정권이 인민대중의 자주적권리의 대표자로서 자기의 사명과 임무를 원만히 수행할수 있게 하는데서 표현된다.

인민정권은 인민들에 의하여 선거되는 각급 주권기관 대의원들에 의하여 대표된 다. 인민대중은 자기들이 추천하고 선거한 각급 주권기관의 대의원들을 통하여 나라 의 정사에 참가하며 자기의 자주적권리를 행사한다. 따라서 인민정권이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인민대중의 자주적권리 의 참다운 대표자로 되자면 각급 주권기 관선거에서 민주주의원칙을 철저히 구현 하며 대의원들을 인민의 충복으로 튼튼히 꾸려야 한다.

우리 나라 선거제도는 선거진행의 모든 공정과 계기들을 철저히 인민대중의 대표 들로 주권기관을 꾸릴수 있도록 규제함으 로써 우리의 인민정권이 철두철미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인민의 정권으로 되도록 하고있다.

위대한 대원수님들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나라 에서는 우리의 인민정권이 인민대중의 자 주적권리의 대표자로 될수 있게 제13기에 이르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와 지방 각 급 주권기관대의원선거가 헌법과 선거법 에 준하여 정상적으로 민주주의적원칙에 서 진행되였으며 선거를 통하여 최고인민 회의를 비롯한 각급 주권기관들의 대의원 구성을 끊임없이 개선하였다.

우리 나라에서 최고인민회의를 비롯한 각급 주권기관의 대의원들은 나라의 정사 토의에 직접 참가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민정권이 인민대중의 자 주적권리의 대표자로 되자면 대의원들을 당 과 혁명에 끝없이 충실하고 조국과 인민 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복무할수 있는 사 람들로 꾸려야 한다.

제1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로부터 제13기까지의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와 수십차례에 걸쳐 진행된 각급 주권기관 대의원선거의 결과 각급 주권기관들에는 항일혁명투사들과 조국해방전쟁참가자들을 비롯하여 사회주의건설과 강성국가건설에서 조국과 인민앞에 위훈을 세운 일군들, 당과 수령에게 무한히 충직하고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일하는 로동자, 농민, 군인, 지식인 등 각계각층 인민대중의우수한 대표들이 대의원으로 선거되였다.

우리 나라 선거제도의 우월성과 생활력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구성이 혁명발전과 시대적요구에 맞게 끊임없이 개선완성되여온데서 뚜렷이 증명되였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구성에서 1960년대 이전시기에는 로동자, 농민출신대의원이 전체 대의원의 70%이상을 차지하였다.

그 이후 최고인민회의 대의원구성에서 기술자, 전문가들을 비롯한 지식인출신대 의원들의 비중이 늘어났다. 특히 1990년 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의 70%이상이 교수, 박사를 비롯하여 학위학직소유자들과 과학자, 기술자, 전문가들이였으며 그 수는 계속 늘어나고있다. 제13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구성에서 그 수는 91.7%에 달하였다.

현재 최고인민회의 대의원구성에서 우리 나라의 최고표창인 **김일성**훈장과

김일성상, 김정일훈장과 김정일상, 공화국영웅, 로력영웅칭호를 수여받은 일군이 40%이상을 차지하고있다. 이것은 우리 나라에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이 그 어떤특권계층이 아니라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복무하는 인민의 충복들이라는것을 뚜렷이 확증하고있다.

참으로 우리의 선거제도는 인민의 참다운 대표들을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선출함으로써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공화국정권을 더욱 공고발전시키며 인민정권을 인민대중의 자주적권리의 대표자로 되게 하는데 참답게 이바지하는 가장 우월한 선거제도이다.

우리 나라 선거제도의 우월성과 생활력은 다음으로 인민대중이 국가와 사회의 한 성원으로서 자기의 정치적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수 있게 철저히 담보하고있는데서 표현된다.

해당 사회에서 사람들이 차지하는 지위 와 역할은 자기에게 부여된 법적권리를 실 질적으로 행사하는가 못하는가 하는데 따라서도 규정된다. 국가가 공민들에게 부여한 법적권리는 그 담보조건이 원만히 보 장될 때 철저히 실현될수 있다.

우리 나라 선거제도는 인민대중이 선거할 권리를 행사하는데서 자기의 정치적권리를 원만히 행사할수 있도록 일반적, 직접적, 평등적, 비밀투표의 선거원칙을 정확히 규제하였을뿐아니라 그 실현조건들을 법적으로 확고히 담보하고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사회주의헌법에 규제된 가장 인민적이며 보편적인 선거의 기본원칙이 선거의 조직 및 실시과정에 철저히 구현되고있다.

우리 나라 선거제도는 우선 인민대중이 그 어떤 차별이나 제한이 없이 동등한 권 리를 가지고 선거에 참가할수 있게 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 모든 공민은 성별, 민족별, 직업, 거주기간, 재산과 지식정도, 당별, 정견, 신앙에 관계없이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행사한다. 일반공민들은 물론이고 사회보장자들과 군대에 복무하는 공민들을 포함하여 공화국령역안의 모든 공민들이 선거할 권리를 가진다. 다른 나라에 살고있는 공화국공민들도 조국에 머무르는 기간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가 진행되는 경우 희망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수 있다.

우리 나라 선거제도는 또한 선거자들의 정치적권리가 정확히 실현되도록 선거절 차와 방법을 규제하고있다.

우리 나라에서 모든 선거자들은 1인1표의 원칙에 따라 한번만 선거에 참가하고 있다. 선거구도 매 선거구에 망라된 선거자수가 같게끔 조직되므로 모든 선거자들의 투표효과는 꼭같다. 선거자들은 자기 손으로 직접 선거표를 선거함에 넣으며 비밀투표가 진행된다.

공화국선거제도가 모든 공민들의 정치 적권리실현을 철저히 담보해주기때문에 우 리 인민들은 선거날을 하나의 큰 명절로 맞 이하고있다. 첫 민주선거가 진행된 주체35(1946)년 11월 3일만 보아도 온 나라 인민들이 선거장에 솔문을 세워놓고 농악을 울리면서춤을 추고 노래를 불렀다. 첫 민주선거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인민은 선거가 진행될 때마다 나라의 주인된 권리를행사한 기쁨을 안고 온 나라에 노래, 춤바다를 펼쳐놓는것을 전통화하였다. 선거날이 이렇게 커다란 경사의 날로 되고있는 나라는 오직 우리 나라밖에 없다.

우리 인민이 선거날을 이렇듯 명절과 같이 뜻깊게 맞이하는것은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우리 인민정권의 귀중함과 고마움, 공화국의 공민된 긍지와 자부심을 절실히 느끼고있기때문이며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을 영원히 높이 우려러모시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령도하시는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을 충정으로 받들어나갈 결의에 충만되여있기때문이다.

우리는 자기의 우월성과 생활력을 남김 없이 발휘하고있는 가장 혁명적이며 인민 적인 선거제도를 가지고있는 크나큰 궁지 와 자부심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따라 최후의 승 리를 향하여 힘차게 싸워나가야 할것이다.